



보건복지부



수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유)

제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1. 한사협-2020-공문발송-00608(2020.10.27.)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663호, 2019.8.12. 공포) 시행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2020.1.1.) 교과목 수강신청 없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실습을 미리 실시한 사람이 법령 시행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교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행정사항

- (대상학생) 동 조치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사전실습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사회복지사협회) 동 조치에 따른 자격발급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집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표준운영안 마련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신강희** 보건사무관 대결 2020. 11. 16.
조영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924 (2020. 11. 1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022 팩스번호 044-202-3947 / 123a123b123c@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